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 소송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사건

제6장 기타 검토사례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 목적

언론중재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재산권, 초상권, 음성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에 관련된 민사판결(이하 '언론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202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이용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튜브에 대한 법원 판단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피고 매체 중 언론사 운영 유튜브 채널이 포함된 사건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을 시도했다.

미디어환경의 변화는 언론소송의 양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목 중 하나는 신문,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YouTube) 채널을 상대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송 가운데서도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에 대하여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언론소송에서 기존 텍스트 기반의 언론보도에 비해 방송, 방송 다시보기,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 등 영상매체를 상대로 제기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미디어 이용 행태가 변화하는 뚜렷한 흐름으로 보인다.

2. 자료수집 방법

분석 대상 판결은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통해 사건번호를 수집하고, 해당 사건의 판결서를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하였다.

판결 검색 시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 ⑥보도&음성 ⑦보도&사생활 ⑧보도&성명 ⑨기사삭제 ⑩언론중재위원회 ⑪유튜브&보도 등을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3. 분석 대상

가. 2022년도 분석 대상 언론 관련 판결은 173건

이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선고 일자를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법익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 언론사닷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등)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로서 총 173건이 수집되었다.

나. 분석 대상 판결은 심급, 확정 여부와 무관

심급 및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 판결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다. 매체별 분석 대상 총 건수는 316건

다수 매체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매체별로 보도 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인용내용·손해배상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피고가 다수 매체인 경우 매체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기도 했다. 통계분석의 목적상 소송 사건을 매체 수에 따라 분할한 결과, 매체별 분석대상건수는 총 316건이었다.

수집된 판결 가운데 다수 매체를 상대로 청구된 사건이 많아 분석대상판결 건수가 2021년 188건에서 2022년 173건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체별 분석대상건수는 259건에서 31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라. 청구권별 재분류 총 건수 476건

언론소송 중 상당수는 단일한 청구가 아니라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형태를 보인다. 법원이 각 청구별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분석하기 위해 일부 분석 항목에서는 매체별 분석대상건수 316건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경우 청구권별 총 건수는 476건으로, 2021년 425건에 비해 증가하였다.

4. 분석 내용

본 보고서는 2022년도 언론관련판결의 소송제기 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의 소송 결과 등을 담고 있다.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송제기 현황

심급별 소송건수, 청구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매체별 피고구성

나. 소송 결과

심급별 처리 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소송 결과, 침해유형별 소송 결과, 원고유형별 소송 결과,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라.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 소송 결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인용된 보도문의 게재시기 및 분량 등

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 소송으로 이행한 사건에 대한 위원회 결정과 법원 판결 비교

바. 유튜브(YouTube) 관련 판결 분석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언론소송 결과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가. 코딩 항목

〈표 1〉 코딩 항목

구분	코딩 항목	
일반사항	01. 판결번호	04. 심급
	02. 선고일자	05. 청구의 종류
	03. 법원명	06. 침해유형
원고	07. 공적인물 분류	08. 대표원고 분류
피고	09. 매체별 피고 분류	
	10. 사건 피고구성	
	11.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매체분류	12. 매체분류	
청구별 처리결과	13. 청구별 처리결과	
	13-1. 정정보도	13-4. 손해배상
	13-2. 반론보도	13-5. 기사삭제
	13-3. 추후보도	13-6. 보도금지
기타	14. 원고 기준 원심유지 여부	
손해배상	15. 사건 청구액	18. 매체별 인용액
	16. 사건 인용액	19. 손해배상 기각사유
	17. 매체별 청구액	
정정보도	20. 정정 기각사유	21 정정 각하사유
반론보도	22. 반론 기각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형식	23. 보도의 인용 여부	26. 보도위치
	24. 보도시기	27. 활자크기 지정 여부
	25. 보도본문 길이	

나. 코딩 방법

수집된 판결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기존 판결분석 보고서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했다.

1) 대표 원고 분류

- ① 다수 원고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단체로 분류했다.
- ② 판결에서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은 공적 인물 범주에 포함시켰다.
- ③ 공적 인물이란 정치인·고위공직자·전문인·언론인·기업인·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 또는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 사항이 공적 관심사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단, 고위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상의 공직자¹⁾를 말한다. 단,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표기하였다.
- ④ 공적 인물 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했다. 전직이라 함은 가령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소송물이 되었으나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는 원고가 임기만료나 사직, 해임 등으로 인하여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의미한다.
- ⑤ 일반인과 공적 인물이 함께 신청한 경우 공적 인물로 분류했다.

2) 매체명 분류

- ①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했다.
예) 사건 피고는 (주)A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A신문, A신문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다면 2개의 매체로 각각 코딩함
-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해당 언론인 소속 매체를 기준으로 코딩했다.

3) 매체별 피고 분류

- ①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대표/국장/부장/담당 등으로 분류하였다.
-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편집국장, 보도본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했다.

1) 국무위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4)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언론사 소속이 아니거나 보도에 관여하지 않은 외주 제작사 직원 등은 언론인에 포함하지 않았다. 언론인 개인은 정정보도 등 보도계재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항목은 언론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코딩하였다.

5) 청구별 처리결과

①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승소율에는 원고 일부승소 사건을 포함했다.

예) 원고 일부승소 사건 :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으나 정정보도만 인용되고 손해배상은 기각된 경우 등

② 2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판결 주문의 취소 및 변경의 형태로 나타나고 3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 삼아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했다.

6) 원고 원심유지 여부

2심의 원심은 1심, 3심의 원심은 2심을 말한다. 상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심의 취지와 같다면 '승유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과 달리 상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면 '승반복' 등으로 코딩했다.

7) 매체별 청구액 및 인용액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 및 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 및 인용액으로 기재했다.

② 다수 매체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 및 인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매체별로 기재했다.

예) 'A신문사와 B신문사는 연대하여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 청구액에 A신문사에 1억원, B신문사에 1억원 각각 기재

③ 지면과 인터넷(언론사닷컴)에 동시에 보도계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피고가 1개 언론사이지만 매체 분류상 2개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의 청구액과 주문 인용액을 각 반액으로 나누어 청구액 및 인용액을 각각 기재했다.

예) A신문사에 정정보도/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지면과 인터넷 페이지에 동시에 보도계재를 요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액을 1/2로 나누어 기재

- ④ 언론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 및 인용액에 합산했다.
단, 언론사와 언론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거나 인용한 경우에는 언론사에 대한 청구액 및 인용액만을 기재하였다.
예) A신문사와 담당기자가 연대하여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 1억 원만 기재
- ⑤ 상소심의 판결문에 청구취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청구취지상 청구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했다.

제2장 소송제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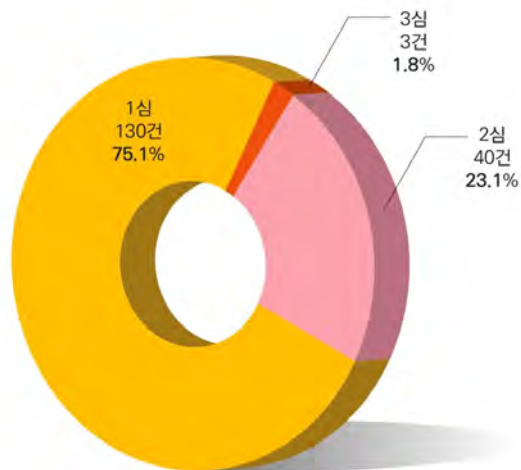
2022년도에 선고된 언론관련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소송건수, 청구별·침해유형별·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등 소송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소송건수

1심 75.1%, 2심 23.1%, 3심 1.8%

분석 대상 판결의 심급별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1심 판결이 130건(75.1%), 2심(환송 후 심리 포함)이 40건(23.1%), 3심이 3건(1.8%)²⁾이다.

〈표 2-1〉 심급별 건수



2) 3심 판결의 수집이 저조한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된 판결은 열람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청구별 소송건수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은 손해배상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구분한 후 매체별로 청구한 내용을 분석하여 원고가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141건(44.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예년과 변함없이 피해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한 경우가 86건(27.2%)으로 뒤를 이었다.

〈표 2-2〉 청구별 건수

청구명	건수	비율(%)
손해배상	141	44.6
정정보도/손해배상	86	27.2
기사삭제/손해배상	20	6.3
정정보도	19	6.0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16	5.1
반론보도	12	3.8
정정보도/반론보도	9	2.8
추후보도/손해배상	5	1.6
정정보도/기사삭제	4	1.3
반론보도/손해배상	2	0.6
기사삭제	1	0.3
정정보도/기사삭제/손해배상	1	0.3
합 계	316	100

한편,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합산해 살펴본 결과, 손해배상 청구가 271건(5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정보도청구 135건(28.3%), 반론보도청구 39건(8.2%), 기사삭제청구 26건(5.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청구명	건수	비율(%)
손해배상	271	56.9
정정보도	135	28.3
반론보도	39	8.2
기사삭제	26	5.5
추후보도	5	1.1
합 계	476	100

3.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최다 소송 유형은 명예훼손

소송건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법익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예년과 같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건이 155건(8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명예·신용훼손을 주장하는 경우가 5건(2.8%),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2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법익에 관한 통계는 판결문상 원고가 해당 법익의 침해를 주장한 내용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기사삭제청구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인격권 침해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침해당한 인격권을 별도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따로 통계화하지 않았다.

〈표 2-4〉 침해유형별 건수

침해유형	건수	비율(%)
명 예	155	89.6
명예/신용	5	2.8
명예/초상	2	1.1
명예/신용/재산	2	1.1
명예/개인정보	1	0.6
명예/성명	1	0.6
명예/음성	1	0.6
명예/음성/개인정보	1	0.6
명예/재산	1	0.6
명예/저작권	1	0.6
명예/초상/사생활	1	0.6
명예/초상/성명	1	0.6
저작권	1	0.6
합 계	173	100

4.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원고유형은 공적 인물

언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개인이 청구한 사건은 100건(57.8%), 단체가 청구한 사건은 73건(42.2%)이었다.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하여 가장 많은 원고유형은 ‘공적 인물’로 총 71건(41.0%)이 집계되었다. 공적 인물 중에서는 정치인이 21건으로 29.6%, 공직자가 10건으로 14.1%를 차지했다.

단체 중에는 예년과 동일하게 ‘기업’이 32건(18.5%)로 가장 많은 언론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고, 그 뒤로 공공단체 11건(6.3%), 종교단체 9건(5.2%) 등의 순이었다.

〈표 2-5〉 원고유형별 건수

원고유형		건수	비율(%)
개인	공적 인물	71	41.0
	일반인	29	16.8
	소 계	100	57.8
단체	기업	32	18.5
	공공단체	11	6.3
	종교단체	9	5.2
	일반단체	6	3.5
	언론사	6	3.5
	지방자치단체	6	3.5
	교육기관	2	1.1
	국가기관	1	0.6
	소 계	73	42.2
	합 계	173	100

* 공적인물 유형별 건수

공적인물 유형	건수	비율(%)
정치인	21	29.6
공직자	10	14.1
전문인	8	11.3
기업인	6	8.4
연예인	6	8.4
언론인	5	7.0
예체능인	2	2.8
기 타	13	18.3
합 계	71	100

5.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인터넷 매체³⁾에 대한 소송이 가장 많아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누어 매체유형별 건수(총 316건)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신문과 언론사닷컴을 합산한 인터넷매체가 183건(57.9%)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방송 62건(19.6%), 일간신문 23건(7.3%), 주간신문 13건(4.1%), 라디오와 포털이 각각 4건(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매체유형별 건수

매체유형		건수	비율(%)
인터넷매체	인터넷신문	106	33.5
	언론사닷컴	77	24.4
	소 계	183	57.9
방 송		62	19.6
일 간		23	7.3
주 간		13	4.1
라디오		4	1.3
포 털		4	1.3
월 간		2	0.6
뉴스통신		2	0.6
기 타		1	0.3
불 명		22	7.0
합 계		316	100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183건)의 경우, 인터넷신문이 106건(33.5%), 신문사 또는 방송사 홈페이지 등 언론사닷컴이 77건(24.4%)으로 집계되었다.

판결문상 정확히 어떠한 종류의 매체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불명으로 집계하였으며, 매체유형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청구취지에서 인터넷에 보도문 게재를 청구한 경우는 일괄적으로 인터넷신문으로 분류하였다.

3) 언론보도를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생산한 보도를 자사 또는 계열사 홈페이지에 제공 또는 매개하는 '인터넷 신문'과 '언론사닷컴'을 '인터넷 매체'로 분류하였다.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 대하여 청구한 소송(7건)의 경우 일괄적으로 인터넷신문으로 집계하였는데, 아직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법적 성격 등이 정립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 언론사가 새롭게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방식이 '인터넷 신문'의 서비스 제공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타'로 분류된 1건은 특정 종교단체의 소식지로 발간 주기를 알 수 없었다.

6. 피고 분류

언론소송의 피고 구성, 언론사 단독이 가장 많아

매체유형별로 분류한 316건의 피고들을 분석한 결과, 언론소송에서 원고는 언론사 소속 개인보다 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만 피소된 건이 15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와 담당 기자(또는 PD)가 함께 피소된 사건이 70건(22.2%)으로 뒤를 이었다. 본래 언론사 구성원이 아닌 제보자 등 비(非)언론인에 대한 소송은 분석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언론매체에 칼럼이나 사설을 기고한 외부 필자,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발언한 패널 등에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비언론인으로 분류(5건)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2-7〉 언론소송 피고 구성

언론소송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	151	47.8
언론사/담당	70	22.2
담 당	35	11.1
언론사/대표	9	2.8
대 표	9	2.8
국장/부장/담당	8	2.5
언론사/국장/담당	6	1.9
언론사/대표/담당	5	1.6
대표/담당	4	1.3
언론사/대표/국장/담당	3	1
언론사/담당/불명	2	0.6
국 장	2	0.6
담당/비언론인	2	0.6
대표/국장/담당	2	0.6
비언론인	2	0.6
언론사/담당/비언론인	1	0.3
담당/불명	1	0.3
불 명	4	1.3
합 계	316	100

피고 분류를 다시 언론사 및 언론사 내 직위별로 나누어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언론사 247건(53.8%), 담당 기자(PD 등) 139건(30.3%), 대표이사(발행인 포함) 32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직책에 비해 담당기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표 2-8〉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직위별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	247	53.8
대표이사	32	7.0
국 장	21	4.6
부 장	8	1.7
담 당	139	30.3
기타(비언론인, 불명 등)	12	2.6
합 계	459	100

제3장

소송 결과

이 장에서는 분석 대상 판결의 소송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심급별, 청구별, 침해유형별, 원고유형 및 매체유형별로 분류하여 원고 승소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결과

언론 관련 소송 원고 승소율은 38.2%

2022년도 언론 관련 소송을 분석한 결과 원고 승소율은 38.2%로 예년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급별로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면, 1심 원고 승소율은 37.7%, 2심(환송후심 포함)은 40.0%로 승소율이 전년 대비 낮았다. 3심 원고 승소율 역시 33.3%로 다소 낮았으나 분석대상 판결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 3-1〉 심급별 소송결과

심급	원고승	원고패	원고 승소율(%)
1심	49	81	37.7
2심	16	24	40.0
3심	1	2	33.3
합 계	66	107	38.2

〈표 3-2〉 최근 3년간 심급별 승소율

(단위: %)

심급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1심	39.7	42.5	37.7
2심	40.6	50.0	40.0
3심	54.5	37.5	33.3
전체 원고 승소율	40.9	44.1	38.2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는 비율 90.7%

분석 대상 판결 173건 중 2심 40건과 3심 3건을 대상으로 원심판결 유지 여부를 조사했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인용되었는지 여부(일부 인용 포함)를 기준으로 승·패소를 분류한 결과, 상소심이 원심의 판결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비율은 90.7%(39건)로 전년과 거의 같았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원심판결 유지 비율은 92.5%였고, 상고심(대법원)의 원심 판결 유지 비율은 66.6%로서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 결과가 번복된 사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3-3〉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구분	건수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2심	40 (100)	15 (37.5)	22 (55.0)	2 (5.0)	1 (2.5)
3심	3 (100)	1 (33.3)	1 (33.3)	1 (33.3)	0 (0.0)
합계	43 (100)	16 (37.2)	23 (53.5)	3 (7.0)	1 (2.3)
		39 (90.7)		4 (9.3)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결과

청구별 승소율도 작년 대비 하락

173건의 소송건을 매체별로 우선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청구별로 재분류하여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았다. 정정보도청구(135건) 승소율은 31.9%로 나타났고 반론보도청구(39건)의 승소율은 41.0%, 손해배상청구(271건) 승소율은 30.6%로 나타났다. 추후보도청구 승소율은 100%를 기록하였으나 청구 사례가 5건에 불과하여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청구별로 계산한 원고 승소율은 32.4%로 2021년 35.6% 대비 하락하였다.⁴⁾

〈표 3-4〉 청구별 소송결과

청구	총건수	기각	각하	인용	원고 승소율(%)
정 정	135	89	3	43	31.9
반 론	39	22	1	16	41.0
추 후	5	0	0	5	100
기사삭제	26	17	2	7	26.9
손 배	271	185	3	83	30.6
계	476	313	9	154	32.4

4) 위 심급별 결과 통계에서 원고 승소율을 38.2%로 소개했으나 청구별 승소율 합산 값이 더 낮은 이유는 '심급별 소송결과' 통계는 하나의 소송에서 복수의 매체를 대상으로 다수의 청구를 동시에 제기하였는데 그중 일부 청구만 인용된 경우에도 원고 승소로 집계하였기 때문이다.

4. 침해유형별 결과

명예훼손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39.4%

원고의 청구취지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했던 침해유형별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39.4%로 나타났다.

그 밖에 ‘명예/신용’, ‘명예/초상’, ‘명예/신용/재산’ 등 다른 침해유형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표본이 적어 통계로서의 의미를 도출하기 어렵다.

〈표 3-5〉 침해유형별 소송결과

침해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명 예	155	61	39.4
명예/신용	5	2	40.0
명예/초상	2	2	100.0
명예/신용/재산	2	0	0.0
명예/개인정보	1	0	0.0
명예/성명	1	1	100.0
명예/음성	1	0	0.0
명예/음성/개인정보	1	0	0.0
명예/재산	1	0	0.0
명예/저작권	1	0	0.0
명예/초상/사생활	1	0	0.0
명예/초상/성명	1	0	0.0
저작권	1	0	0.0
합 계	173	66	37.8

5. 원고유형별 결과

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 작년 대비 하락폭 커

원고유형에 따른 승소율은 개인의 경우 공적인물 43.7%, 일반인 37.9%로 집계되었다. 공적인물 가운데 예·체능인, 연예인, 언론인 등의 승소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표본이 부족하여 통계적 의미는 없다.

단체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승소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표본이 각 1건, 6건에 불과하여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은 42.0%로서 2021년(43.6%)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32.9%로 2021년(45.1%)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3-6〉 원고유형별 소송결과

원고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원고 승소율(%)
개인	공적 인물	71	31	43.7
	일반인	29	11	37.9
	소 계	100	42	42.0
단체	기업	32	14	43.8
	일반단체	6	1	16.7
	종교단체	9	3	33.3
	공공단체	11	2	18.2
	언론사	6	0	0
	교육기관	2	0	0
	지방자치단체	6	3	50.0
	국가기관	1	1	100.0
	소 계	73	24	32.9
	합 계	173	66	37.8

* 공적 인물 유형별 승소율

원고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원고 승소율(%)
공적 인물 유형	정치인	21	6	28.6
	전문인	8	1	12.5
	공직자	10	5	50.0
	기업인	6	3	50.0
	언론인	5	3	60.0
	연예인	6	5	83.3
	예·체능인	2	2	100.0
	기타	13	6	46.2
	계	71	31	43.7

6. 매체유형별 결과

인터넷 매체 상대 사건의 원고 승소율 37.2%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316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소송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건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 상대 소송(183건)의 원고 승소율은 37.2%(68건)로 2021년의 48.3%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일간지를 상대로 한 소송(23건)의 원고 승소율은 30.4%, 방송을 상대로 한 소송(62건)에서는 24.2%로 인터넷 매체 대비 낮은 승소율을 보였다.

〈표 3-7〉 매체유형별 소송결과

매체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인터넷 매체	183	68	37.2
방 송	62	15	24.2
일 간	23	7	30.4
주 간	13	3	23.1
라디오	4	3	75.0
월 간	2	0	0
뉴스통신	2	1	50.0
포 털	4	0	0
기 타	1	1	100.0
불 명	22	19	86.4
합 계	316	117	37.0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인터넷신문 대상 사건(106건)에서 41.5%, 언론사닷컴 대상 사건(77건)에서 31.2%로 파악되었다.

〈표 3-8〉 인터넷 매체 유형별 소송결과

인터넷 매체 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인터넷신문	106	44	41.5
언론사닷컴	77	24	31.2
합계	183	68	37.2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언론관련판결에서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방식이 손해배상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손해배상은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권과 달리 불법행위를 전제로 인정되는 청구권으로서 그 성격이 다르다.

이에 위원회는 청구권별로 분류된 사건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만을 대상으로 원고 승소율, 청구액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사건이 전체 평균값의 상승 또는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구액 및 인용액의 중앙값⁵⁾과 최빈값⁶⁾을 함께 조사했다.

원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건 전체의 청구액과 인용액을,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매체별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의 청구액과 인용액에 언론인에 대한 청구액을 합산했다.

5) 중앙값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을 말한다.

6) 최빈값은 전체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원고 승소율 30.6%

청구별 통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번 분석 대상 손해배상청구 271건 중 전부 혹은 일부 청구금액이 인용된 건은 83건이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30.6%로 2021년 34.3% 대비 소폭 하락해,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인용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율

연도	전체 청구건수	손해배상청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2020	421	181	55	30.4
2021	425	210	72	34.3
2022	476	271	83	30.6

2. 청구액

평균 손해배상청구액 7,308만 원, 중앙값 2,500만 원

청구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건 비중 25.5%

연론관련판결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을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7,308만 원이었고, 중앙값은 약 2,500만 원, 최빈값은 5천만 원인 것으로 집계되어, 최빈값을 제외한 청구액 평균값과 중앙값은 최근 3년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손해배상청구 271건 중 1억 원 이상의 고액 청구 사건이 69건(25.5%)을 차지하였으며, 최고 청구액은 10억 원, 최저 청구액은 50만 원이었다.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4-2〉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관련 현황

(단위: 원)

연도	건수	평균액	중앙값	최빈값	최저액	최고액
2020	179	107,167,421	50,000,000	30,000,000	2,000,000	300,000,000
2021	210	90,298,846	30,000,050	50,000,000	1,000,000	2,000,000,000
2022	271	73,081,864	25,000,000	50,000,000	500,000	1,000,000,000

3. 인용액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 약 570만 원, 인용 최고액 3,900만 원

2022년 총 271건의 손해배상청구 중 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건수는 83건(30.6%)이다. 평균 인용액은 약 570만 원이었고 중앙값은 3,449,774원,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3,900만 원이었다. 손해배상청구액 현황과 동일하게, 인용액 역시 평균액, 중앙값, 최저액, 최고액 등 최빈값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표 4-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인용액 관련 현황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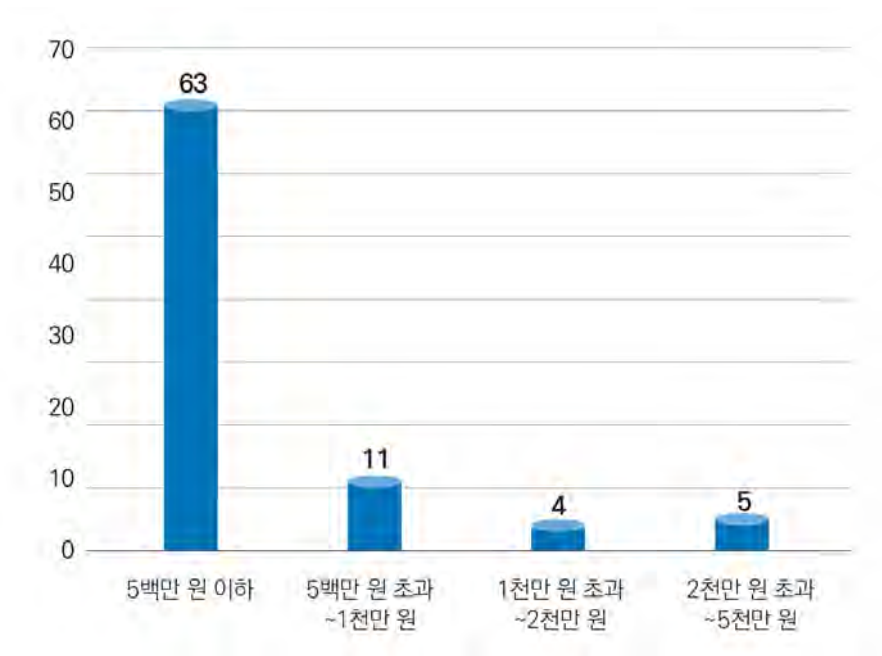
연도	건수	평균액	중앙값	최빈값	최저액	최고액
2020	55	18,013,455	5,000,000	5,000,000	1,000,000	205,240,000
2021	72	8,818,056	4,750,000	3,000,000	1,000,000	70,000,000
2022	83	5,701,805	3,449,774	5,000,000	500,000	39,000,000

4.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 5백만 원 이하 75.9%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83건의 인용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백만 원 이하가 63건(75.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가 11건(13.3%),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4건(4.8%),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5건(6.0%)으로 집계되었다. 수집된 판결문 중 인용 최고액은 3,900만 원으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를 인용한 사례는 없었다.

〈표 4-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5. 침해유형별 손해배상 승소율 및 인용액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 30.3%

전술했다시피 손해배상청구 271건 중 83건이 인용되어 원고 승소율은 30.6%였다. 손해배상청구 사건(271건)을 침해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사건수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 사건(241건)에서 원고 승소한 비율은 30.3%(73건)로 나타났다.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인용액 평균값은 약 542만 원, 인용액 중앙값은 3백만 원이었다.

명예훼손 다음으로 많은 침해유형은 명예 및 신용훼손(7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6건)를 동시에 주장한 사건이다. 분석 대상 사건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승소율은 71.4%와 50%를 각 기록했으며, 인용액 평균값과 중앙값은 각 920만 원과 4백만 원(명예/신용), 7백만 원과 3백만 원(명예/초상)인 것으로 집계되어 명예훼손만을 다루는 사건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이 인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표 4-5〉 침해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⁷⁾

침해유형	손배청구건수	인용	승소율 (%)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명예	241	73	30.3	5,428,079	3,000,000
명예/신용	7	5	71.4	9,200,000	4,000,000
명예/초상	6	3	50.0	7,000,000	3,000,000
명예/신용/재산	3	0	0	0	0
명예/성명	2	2	100.0	5,000,000	5,000,000
명예/음성	2	0	0	0	0
명예/재산	2	0	0	0	0
명예/초상/사생활	2	0	0	0	0
명예/개인정보	1	0	0	0	0
명예/음성/개인정보	1	0	0	0	0
명예/저작권	1	0	0	0	0
명예/초상/성명	1	0	0	0	0
저작권	2	0	0	0	0
합계	271	83	30.6	5,701,805	3,449,774

7) 표 2-4는 전체 소송건수 173건 기준, 이 표는 매체별 청구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건만을 집계하여 침해유형별 건수에 차이가 있음

6. 원고유형별 손해배상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인물 손해배상 승소율은 작년 대비 상승, 인용액은 하락

원고유형별로 살펴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일반인(42건)의 승소율이 35.7%(15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1년(53.7%)에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으나 2021년 일반인 손해배상 승소율이 다소 이례적으로 높았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공적인물(143건)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율은 32.9%를 기록하여 2021년 28.2% 대비 상승했으며, 이는 전체 손해배상청구사건 승소율(30.6%)보다 높았다. 공적인물 중에서는 연예인(24건)의 승소율이 95.8%(23건)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특정 연예인이 다수 매체를 상대로 허위사실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기 때문이다.

공적인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승소율은 상승하였으나 인용액 평균값은 약 385만 원, 중앙값은 150만 원으로 집계되어, 작년의 약 991만 원과 5백만 원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위 특정 연예인이 다수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공단체가 청구한 사건의 인용액 평균값(160만 원)과 중앙값(135만 원)도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인용액 평균값 650만 원, 중앙값 650만 원).

반면, 종교단체가 제기한 사건의 승소율은 전년에 비해 떨어졌으나(2021년 44.4%→2022년 25.0%) 인용액 평균값과 중앙값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2021년 인용액 평균값 약 433만 원, 중앙값 2백만 원).

한편, 통상적으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드문데도 1건의 승소사례를 남겼는데, 이는 피고 언론사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인용된 것이다.

〈표 4-6〉 원고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손배청구건수	인용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개인	공적 인물	143	47	32.9	3,851,064	1,500,000
	일반인	42	15	35.7	7,666,667	5,000,000
단체	기업	39	13	33.3	10,188,444	5,000,000
	일반단체	9	1	11.1	3,000,000	3,000,000
	종교단체	12	3	25.0	9,000,000	5,000,000
	공공단체	15	3	20.0	1,600,000	1,350,000
	언론사	7	0	0.0	0	0
	교육기관	1	0	0.0	0	0
	지방자치단체	3	1	33.3	10,000,000	10,000,000
합 계		271	83	30.6	5,701,805	3,449,774

〈표 4-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 인물 유형	손배청구건수	인용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정치인	25	6	24.0	5,000,000	3,000,000
전문인	12	2	16.7	500,000	500,000
공직자	18	2	11.1	8,500,000	8,500,000
기업인	13	1	7.7	30,000,000	30,000,000
언론인	25	5	20.0	3,100,000	1,500,000
연예인	24	23	95.8	1,369,565	1,000,000
예·체능인	4	1	25.0	10,000,000	10,000,000
기 타	22	7	31.8	6,571,429	5,000,000
계	143	47	32.9	3,851,064	1,500,000

7. 매체유형별 손해배상 승소율 및 인용액

인터넷 매체 상대 승소율 평년 대비 감소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매체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원고 승소율에 비해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 승소율이 높게 집계되는 추세였다. 그런데 2022년 언론관련판결에서는 전체 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 승소율(30.6%)과 인터넷 매체 상대 승소율(29.5%)이 소폭이지만 역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률은 18.5%로 낮은 편이었으나 손해배상액 평균값은 1,121만 원으로 다른 매체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과반을 차지하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사건의 인용액 평균값(약 640만 원)과 중간값(5백만 원) 또한 전체사건의 그것보다 높았다.

〈표 4-8〉 매체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건수	원고승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간값(원)
인터넷 매체	인터넷신문	97	33	34.0	6,895,448	5,000,000
	언론사닷컴	59	13	22.0	5,200,000	4,000,000
	소계	156	46	29.5	6,416,299	5,000,000
방송		54	10	18.5	11,210,000	5,000,000
일간		19	4	21.1	5,125,000	4,500,000
주간		9	1	11.1	2,500,000	2,500,000
라디오		3	1	33.3	8,000,000	8,000,000
뉴스통신		2	1	50.0	6,000,000	6,000,000
포털		4	0	0	0	0
월간		1	0	0	0	0
기타		1	1	100	5,000,000	5,000,000
불명		22	19	86.4	1,263,158	1,000,000
합계		271	83	30.6	5,701,805	3,449,774

〈표 4-9〉 최근 5년간 손해배상사건 승소율과 인터넷 매체 상대 손해배상사건 승소율

(단위: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손해배상사건	42.1	34.2	30.4	34.3	30.6
인터넷 매체 상대 손해배상사건	45.0	38.0	35.6	39.7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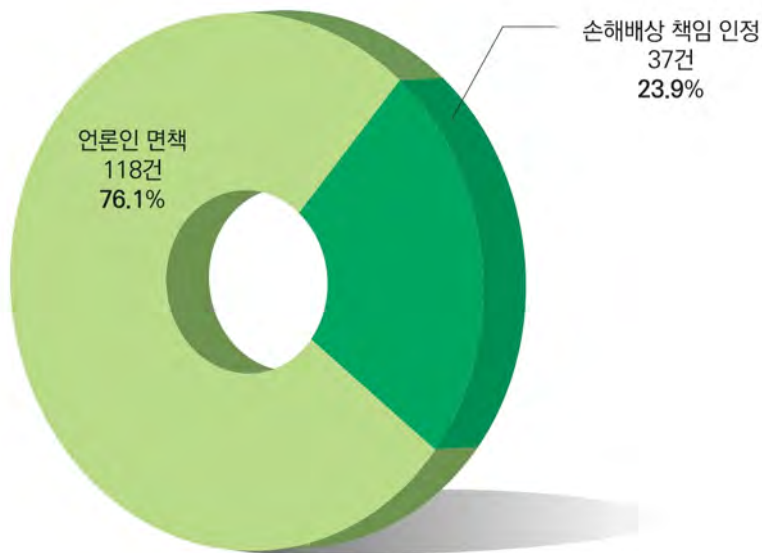
8.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결과

언론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확률 76.1%

손해배상청구 271건 중 언론인(대표, 편집국장, 담당기자 등)을 단독으로 제소하거나 또는 공동 피고로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155건(57.2%)으로 집계되었다.

155건의 청구 중 청구기각, 각하 등으로 언론인이 면책된 경우는 118건(76.1%)이었다.⁸⁾ 언론인을 포함하여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23.9%(37건)로 전체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의 원고 승소율(30.6%) 대비 낮게 나타났다.

〈표 4-10〉 언론인 상대 손해배상청구 결과



8) 법원은 보도의무는 언론인이 아니라 언론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등이 인용되었더라도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경우 언론인이 면책된 것으로 집계하였다.

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위원회 평균 조정액 약 259만 원, 법원 평균 인용액 약 570만 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과와 법원의 판결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분쟁해결절차의 손해배상액 양태를 살펴보는 것은 언론분쟁해결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 별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원회 평균 조정액은 약 259만 원, 중앙값은 200만 원으로 전년(각 약 208만 원, 1백만 원)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법원 평균 인용액은 약 570만 원, 중앙값은 약 345만 원이었다.⁹⁾

〈표 4-11〉 2022년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구분	인용건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언론중재위원회	18	2,592,857	2,000,000	500,000	10,000,000
법원	83	5,701,805	3,449,774	500,000	39,000,000

9)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결과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석은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이므로 분석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고, 두 기관의 손해배상액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려는 데에 의미가 있다.

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손해배상청구 기각의 주된 이유는 보도의 공익성·진실성·상당성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가 공익성·진실성·상당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언론관련판결에서 손해배상을 기각한 판결은 보도내용이 사실주장이 아니라거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위법성 조각을 이유로 들고 있다.

2022년 매체별로 분류한 손해배상청구 총 271건 중 부제소합의 등으로 인하여 각하된 건이 3건, 기각된 건은 185건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사건의 기각 사유를 통계화하였다. 소송물인 보도가 한 개 이상이거나 문제된 사실관계가 여럿일 경우 다양한 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데, 판결문에서 명시된 주된 기각사유 위주로 코딩하였다.

침해유형별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보도의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어 기각된 경우가 46건(25.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을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한 사례는 40건(21.7%), 진실성을 주된 기각사유로 인정한 경우가 29건(15.8%)으로 조사되어, 언론관련판결에서는 주로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2〉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공익/진실성	40	21.6
공익/진실/상당성	32	17.3
진실성	30	16.2
사실적시없음	28	15.2
공익/상당성	23	12.4
평가저하아님	20	10.8
사실주장아님	4	2.2
공 익	3	1.6
당사자불특정	2	1.1
기 타	3	1.6
합 계	185	100

제5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 31.9%

173건의 분석대상판결을 매체별로 분류한 후 청구별로 재분류했을 경우 정정보도청구건은 총 135건이었다.

정정보도청구사건(135건) 중 정정보도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19건(14.1%)에 불과했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병합하여 청구한 사건이 86건(63.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정정 · 반론 · 손해 청구 16건(11.9%), 정정 및 반론청구 9건(6.7%), 정정 및 기사삭제청구 4건(2.9%), 정정 · 손해 · 기사삭제청구 1건(0.7%) 등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의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손해배상, 기사삭제 등의 청구가 병행되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것은 총 43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31.9%로 나타나, 전체 언론관련판결 원고 승소율(38.2%)에 비해 다소 낮았다.

〈표 5-1〉 정정보도 및 병합청구 현황

구분	건수	비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86	63.7
정정보도	19	14.1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손해배상	16	11.9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9	6.7
정정보도 및 기사삭제	4	2.9
정정보도 · 손해배상 · 기사삭제	1	0.7
합 계	135	100

〈표 5-2〉 최근 3년간 정정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연도	전체 청구건수	정정보도 청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2020	421	145	41	28.3
2021	425	143	57	39.9
2022	476	135	43	31.9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주된 기각 사유는 ‘보도의 진실성’

정정보도청구 사건 중 원고가 패소한 사건(92건)에서 제소기간 도과 등으로 각하된 3건을 제외한 89건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결과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¹⁰⁾하여 기각한 사례가 32건(36.0%)으로 가장 많았다.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기각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 아니라 민법에 근거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주장한 경우다.¹¹⁾ 이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래 통계항목상 공익/상당성으로 분류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보도내용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판결문에 나타난 주된 기각사유 위주로 통계화하였다.

정정보도를 원하는 내용이 보도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지엽말단적 내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경우, 보도내용이 원고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표 5-3〉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진실성	32	36.0
진실성/기타	25	28.1
사실주장아님/위법성조각	9	10.1
개별연관부정	7	7.8
공익/상당성	6	6.7
사실주장아님/진실	4	4.5
사실적시없음	3	3.4
기 타	3	3.4
합 계	89	100

10) 보도가 진실임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외에도, “적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 해도)보도 내용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등이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에 포함된다.

11)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 41.0%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사건은 총 39건으로, 이 중 반론보도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12건(30.8%)에 불과했다.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 다른 청구를 병행한 경우가 27건에 해당하여 정정보도청구 사건 분포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41.0%(16건)로 예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손해배상청구 사건(30.6%)과 정정보도청구 사건(31.9%)에 비해 인용 비율이 높았다.

〈표 5-4〉 반론보도 및 병합청구 현황

구분	건수	비율(%)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손해배상	16	41.0
반론보도	12	30.8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9	23.1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2	5.1
합계	39	100

〈표 5-5〉 최근 3년간 반론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연도	전체 청구건수	반론보도청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2020	421	56	14	25.0
2021	425	38	14	36.8
2022	476	39	16	41.0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주된 기각사유는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닌 경우

반론보도청구 사건 39건 중 인용된 사건(16건)과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된 사건(1건)을 제외하고 기각된 사건은 22건이었다.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한 원 보도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기각된 경우(6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대상 보도에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거나(5건) 청구하는 반론이 보도의 주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일 경우(3건), 청구한 반론보도의 내용이 사실에 반하고 이미 반론권이 행사된 경우(2건), 청구하는 반론이 원 보도의 내용과 차이가 없는 경우(2건) 등에 해당하는 때에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표 5-6〉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사실주장이아님	6	27.3
사실적시없음	5	22.7
지엽말단	3	13.6
사실주장이아님/지엽말단	2	9.1
사실에반함/기반론행사	2	9.1
원보도와같음	2	9.1
기 타	2	9.1
합 계	22	100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법원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 게재를 명한 사건을 청구별로 분석한 결과는 총 64건이었다.

매체유형별로 분류하면 인터넷 매체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11건, 일간신문 6건, 주간신문 2건 등의 순이었다. 인용한 보도의 유형은 정정보도 43건, 반론보도 16건, 추후보도 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동시에 인용한 사건은 8건이었다.

〈표 5-7〉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청구별)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계
일간신문	5	1	0	6
주간신문	1	1	0	2
방 송	7	3	1	11
라디오	2	1	0	3
뉴스통신	1	1	0	2
인터넷신문	14	4	1	19
언론사닷컴	13	5	2	20
기 타	0	0	1	1
합 계	43	16	5	64

한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이 정정보도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¹²⁾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게재 시기와 위치, 본문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 제27조(재판) ②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가. 정정보도등의 게재 시기

언론소송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 진행 결과 못지않게 신속함이 중요하다. 이에 언론중재법에서는 다른 재판보다 언론소송을 우선하여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¹³⁾ 사건처리기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건개시일과 종결일을 분석해야 하지만,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집한 판결문만으로는 사건개시일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사건처리기간을 대체하여 정정보도등 청구가 인용된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명하는 시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22년 언론관련판결에서 법원은 정정보도등 게재를 인용(64건)할 때 ‘판결 확정 후 7일내’ 게재하라고 명한 경우가 42건(76.6%)으로 그 빈도수가 가장 많았다. 대상매체가 방송이거나 주간지인 경우 ‘확정 후 최초’ 이행하라고 선고하기도 하였으나(방송, 주간지 각 2건), ‘확정 후 7일내’와 ‘확정 후 14일내’가 전체 인용 건수의 대부분(57건, 89.1%)을 차지했다.

〈표 5-8〉 정정보도등의 게재 시기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계
확정 후 최초	4	1	-	5
확정 후 3일내	1	-	1	2
확정 후 7일내	31	11	-	42
확정 후 14일내	7	4	4	15
합 계	43	16	5	64

13) 제27조(재판) ①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법원은 언론보도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나. 정정보도등의 게재 위치

청구에 따라 인용된 정정보도등이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용 보도문이 소송 대상 보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게재되어야 한다.¹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가 인용된 64건에 대해 매체유형별 보도 위치를 조사한 결과, 신문, 잡지 등 지면으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 게재가 6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7건, 인터넷 매체의 경우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를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한 사례가 22건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인용 보도문이 매체 이용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명하였다.

〈표 5-9〉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매체유형별)

구분	보도위치	건수	비율(%)
정기간행물	1면	6	75.0
	1면 외	1	12.5
	기타/불명	1	12.5
합계		8	100
방송·라디오	첫머리	7	53.8
	후반	3	23.1
	기타/불명	3	23.1
합계		13	100
인터넷 매체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노출	22	62.9
	주문상 초기화면에 게재하라는 내용 없음	8	22.9
	기타/불명	5	14.2
합계		35	100

※ 보도문을 중복 게재하는 경우가 있어 위 〈표 5-7〉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14)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지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정정보도등의 보도문 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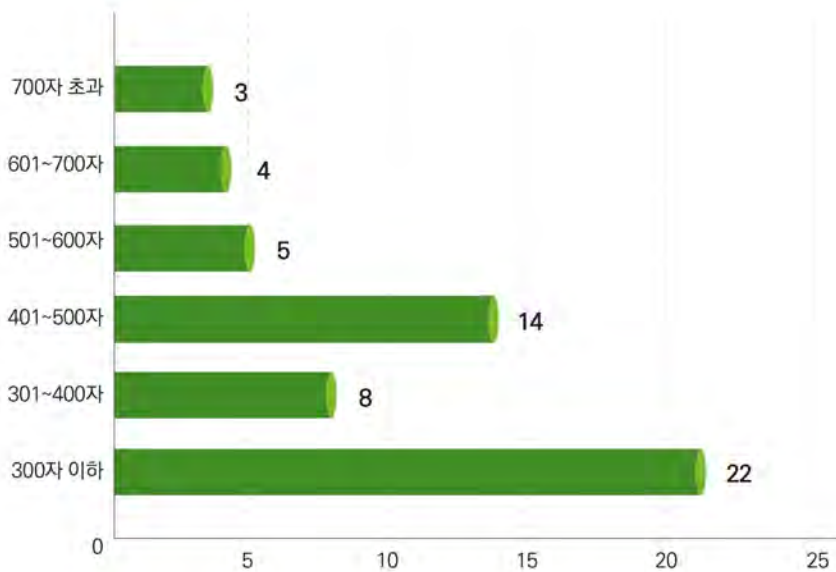
300자 이하 보도문 게재 판결이 가장 많아

언론중재법은 언론소송의 처리기간 및 인용 보도문의 게재위치 뿐만 아니라 인용 보도문의 내용 등이 원고의 피해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¹⁵⁾ 원칙적으로 인용 보도문이 소송 대상 보도 중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분량을 초과할 수 없어 소송 대상 보도보다 짧을 수밖에 없지만, 피해회복의 조치로서 인용 보도문 길이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법원이 보도게재를 명한 사건에서 판결문상 보도 본문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는 56건을 통계화한 결과¹⁶⁾, 글자 수 기준으로 300자 이하가 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1~500자가 14건(25.0%), 301~400자가 8건(14.3%)의 순이었으며, 본문의 길이가 500자를 초과한 보도는 12건(21.4%)으로 집계됐다.

이 항목은 법원의 비실명화처리로 인해 축소된 분량을 감안하여 코딩하였다.¹⁷⁾

〈표 5-10〉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본문 길이



15) 제27조(재판) ③ 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6) 판결문상 인용 보도문 제목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2021년도 보고서부터 제목 형식 및 분량에 대한 통계화 중단

17) 예컨대 비실명화처리된 보도문의 길이가 590자인 경우 600자 이상으로 코딩하였음

제6장

기타 검토사례

1.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결정 사건과 법원 판결 비교

최근 3년간 직권조정결정 사건 원고 승소율 55%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언론중재법 제2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동조 제4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수년 전까지 직권조정사건뿐 아니라 조정불성립사건 등 조정사건 전반에 걸쳐 위원회 조정절차 종료 이후 제기된 소송결과를 추적하여 집계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판결수집창구 장기 폐쇄,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기조 등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집계를 중단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위원회가 수집한 판결 중 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이후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 절차로 전환된 사건을 별도로 취합하여 통계화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보도금지, 기사 열람차단, 손해배상 등을 결정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원고 승소(일부승소 포함) 판결을 내린 경우 그 비율을 승소율로 표기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직권조정결정사건의 승소율은 55%로 나타났다.

참고로 이 통계는 소송 도중 당사자 간 합의 후 소송을 취하하거나 민사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판결이 선고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된 직권조정결정 사건 전체의 45%가 법원에서 뒤집힌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6-1〉 최근 3년간 이의신청별 직권조정결정 승소율

구분	건수	원고승소 (일부승소포함)	원고패소	승소율 (%)
신청인 이의신청	22	15	7	68.2
피신청인 이의신청	33	15	18	45.5
신청인/피신청인 이의신청	5	3	2	60.0
계	60	33	27	55.0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직권조정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수집한 판결문 중 위원회가 직권으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금전배상을 결정한 사건 가운데 당사자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된 건은 총 12건이었다. 그중 5건은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7건은 법원에서도 청구를 인용하였다. 분석 대상 사건수가 많지 않아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의 평균액은 약 466만 원과 약 486만 원인 것으로 집계되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2〉 최근 3년간 직권조정결정 사건의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건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12	4,666,667	3,000,000	1,000,000	20,000,000
인용액	7	4,857,143	5,000,000	1,000,000	10,000,000

위원회의 손해배상 인용 결정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와 반대로, 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금전배상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경우도 있다.

위원회와 법원 중 한 곳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건들을 모아 비교해 보았다. 위원회나 법원 중 어느 한 곳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는 총 16건이었다. 그중 위원회에서 결정한 손해배상액과 같거나 그보다 더 큰 액수를 법원이 인용한 경우는 7건, 위원회가 피해구제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경우는 4건이었다.

〈표 6-3〉 동일 사건의 위원회 직권조정결과와 법원 소송결과 비교

(2020. 1. 1. ~ 2022. 12. 31. 선고일 기준)

법원	판결번호	직권조정결정 조정액	법원 인용액
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849	5,000,000	5,000,000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7707	0	5,000,000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743	5,000,000	5,000,000
전주지법	2019가합2857	5,000,000	0
서울서부지법	2019가합1107	1,000,000	0
서울고법	2019나2051100	3,000,000	0
서울고법	2020나2006052	5,000,000	5,000,000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1900, 2020가합1917(병합)	0	40,000,000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25, 2020가합132(병합)	3,000,000	10,000,000
대전지법	2019나4319	1,000,000	1,000,000
광주지법목포지원	2020가합259	20,000,000	0
광주지법목포지원	2020가합310	0	3,000,000
대구지법	2021나300652	3,000,000	5,000,000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4480	2,000,000	3,000,000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14	3,000,000	0
광주지법해남지원	2021가합71	0	3,000,000

3. 언론사 운영 유튜브 대상 청구사건 분석

원보도에 대한 판단결과가 유튜브에까지 대부분 이어져

언론환경이 변화하면서 상당수의 언론사들은 자사의 유튜브(YouTube) 채널을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는 유튜브를 주된 매체로 운영하기도 하는 등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은 일상이 됐다.

2022년 언론관련판결에서는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 대한 보도게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7건 수집되었다. 아직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법적 성격 등이 정립되지 않아 이번 보고서에서는 통계 항목상 ‘인터넷 신문’으로 분류하였다. 유튜브를 대상으로 한 분석 대상 사건수가 많지 않고 법적 성격 또한 명확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유튜브 대상 사건의 소송결과 추이, 유튜브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시 적용되는 법리 등을 살피기 위해 이번 보고서 부터 별도로 통계화하였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대한 청구는 대체로 소송 대상 보도에 대한 판단을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가 인용된 사례는 2건이었다. 2건 모두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소송이었는데, 법원은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하면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소송 대상 보도 영상 하단에 인용된 정정보도 영상을 링크하거나, 방송에 게재한 정정보도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하도록 판결하였다.

〈표 6-4〉 2022년 언론관련판결 중 언론사 운영 유튜브 대상 청구사건

법원	판결번호	청구	결과	손배인용액(원)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8868	손배	인용	5,000,000
서울서부지법	2021가합831	정정/손배	기각 ¹⁸⁾	0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340 2020가합1357(병합) 2020가합1364(병합) 2020가합1371(병합)	정정/반론	인용	-
서울서부지법	2022가합31146	정정/손배	기각	0
서울서부지법	2022가합241	정정/손배	기각	0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5092	손배	인용	5,000,000
서울서부지법	2021가합41986	정정/손배	정정인용	0

18) 유튜브 채널에 정정보도를 게재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해당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언론사의 라디오 프로그램 및 언론사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인용된 사건

분석 판결 목록(민사 173건)

※ 선고일자순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	2020가합598794	2022-01-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	2021가단5057939	2022-01-1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3	2020가합553043	2022-01-1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	2021가소789	2022-01-13	의정부지법 포천지원	1심	손배	기각
5	2021가단92741	2022-01-1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손배	기각
6	2021나2027421	2022-01-14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7	2021나2002804	2022-01-14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8	2021나2004299	2022-01-14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9	2021가합512049	2022-01-19	서울중앙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각하
10	2021나11373	2022-01-19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11	2019가합105611	2022-01-20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2	2020가합117474	2022-01-20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3	2019가합106072	2022-01-20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4	2020가단5282172	2022-01-21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5	2021가합31842	2022-01-21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6	2020가단5210238	2022-01-21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7	2020나2047923	2022-01-2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18	2021가단206038	2022-01-25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9	2020가합42883	2022-01-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	기각
20	2021가합102103	2022-01-27	서울남부지법	1심	반론	기각
21	2020가합105950	2022-01-28	인천지법 부천지원	1심	손배	기각
22	2020가단281859	2022-02-09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23	2020가단123340	2022-02-09	인천지법 부천지원	1심	손배	기각
24	2021나2022457	2022-02-11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25	2020나2047381	2022-02-1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26	2020나2000153	2022-02-24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27	2019가단249100	2022-03-18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28	2021가단220726	2022-03-24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29	2021가합774 2021가합781(병합)	2022-03-31	대구지법	1심	반론	인용
30	2021나205347	2022-03-31	의정부지법	2심	손배	기각
31	2021가단200345	2022-04-05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32	2021가합106257	2022-04-06	인천지법 부천지원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33	2021나2035620	2022-04-08	서울고법	2심	정정/기사삭제/손배	기각
34	2021나2014883	2022-04-08	서울고법	2심	정정	인용
35	2021나2039912	2022-04-08	서울고법	2심	기사삭제/손배	기각
36	2020가소175364	2022-04-12	대전지법	1심	손배	기각
37	2020가합580304	2022-04-1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38	2020가합117603	2022-04-14	서울남부지법	1심	추후/손배	인용
39	2021나2009980	2022-04-15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40	2021나2047715	2022-04-15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41	2021나79650	2022-04-20	수원지법	2심	손배	인용
42	2020가합552	2022-04-21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43	2020가합109831	2022-04-21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	기각
44	2021나2040158	2022-04-22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45	2020가단5290081	2022-04-2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6	2020가합12612	2022-04-27	청주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7	2021가합517907	2022-04-27	서울중앙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기각
48	2021가단92734	2022-04-2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손배	기각
49	2021나2037428	2022-04-2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50	2020가합603252	2022-04-29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51	2020가합588353	2022-04-2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52	2020가단57180	2022-05-11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손배	인용
53	2021가합36625	2022-05-13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손배	인용
54	2020가합578868	2022-05-1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55	2019가단124533	2022-05-18	대전지법	1심	손배	기각
56	2021가단125	2022-05-18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57	2020가합1340 2020가합1357(병합) 2020가합1364(병합) 2020가합1371(병합)	2022-05-19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58	2020가합7213	2022-05-19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정정/손배	기각
59	2021가합519460	2022-05-2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60	2021가합562648	2022-05-20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61	2022다215876	2022-05-26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인용
62	2021가합794	2022-05-27	서울서부지법	1심	반론	기각
63	2021가합831	2022-05-27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64	2021나2032119	2022-06-08	서울고법	2심	기사삭제/손배	기각
65	2020가합66922	2022-06-09	인천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기각
66	2021가합51913	2022-06-09	대전지법 서산지원	1심	추후/손배	인용
67	2021가단242577	2022-06-10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68	2021가합509272	2022-06-1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69	2021나59253	2022-06-15	인천지법	2심	손배	기각
70	2020가단34897	2022-06-1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71	2021가단15435	2022-06-1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72	2021나23833	2022-06-22	광주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73	2021가단248960	2022-07-01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74	2022나10048	2022-07-06	대전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75	2021나207237	2022-07-07	의정부지법	2심	정정/손배	기각
76	2021가합6521	2022-07-07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손배	인용
77	2021가합40211	2022-07-08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78	2022가합32897	2022-07-08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79	2021가단56932	2022-07-08	제주지법	1심	손배	기각
80	2021나2046255	2022-07-0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81	2022가합31146	2022-07-08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82	2021가합42460	2022-07-08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83	2021가합1583	2022-07-14	서울남부지법	1심	반론	기각
84	2020가합111957	2022-07-14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85	2019가합569431	2022-07-15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86	2021나2016063	2022-07-15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87	2021나2016346	2022-07-1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88	2021나2043980 2021나2043997(병합)	2022-07-1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89	2021나13768	2022-07-20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90	2018가합572188	2022-07-2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91	2020가합30036	2022-07-20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92	2022가단204343	2022-07-20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93	2021가합233	2022-07-21	인천지법	1심	정정	기각
94	2021가합551464	2022-07-2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95	2022나2007370	2022-07-2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96	2020가합1499	2022-08-04	인천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97	2021가단5345476	2022-08-1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98	2022다231168	2022-08-11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99	2020가합42746	2022-08-1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00	2021가합35424	2022-08-1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01	2021가합725	2022-08-1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02	2021가합701	2022-08-12	서울서부지법	1심	추후/손배	인용
103	2018가합34636	2022-08-1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104	2020가합575760	2022-08-1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05	2021가합505218	2022-08-1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06	2021가합524172	2022-08-1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07	2020가합105051	2022-08-18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	기각
108	2022나2002788	2022-08-19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109	2021가단507788	2022-08-19	광주지법	1심	손배	인용
110	2021가단5121472	2022-08-1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11	2021가단5122673	2022-08-1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12	2021가단5129414	2022-08-1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13	2021가합503717	2022-08-2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14	2021나69682	2022-08-25	서울남부지법	2심	손배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15	2021가합547	2022-08-25	인천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16	2022가합31627	2022-08-26	서울서부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기각
117	2021가합31705	2022-08-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18	2020가합517788	2022-08-2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19	2021가합505225	2022-08-2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20	2020가합32886 2020가합32893(병합)	2022-08-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21	2018가합39860	2022-08-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22	2022다222898	2022-08-31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123	2021가합107993	2022-09-01	서울남부지법	1심	반론	기각
124	2021가합428	2022-09-0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125	2021가합35660	2022-09-0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126	2022가합241	2022-09-0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27	2019가합526984	2022-09-0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28	2020가합579687	2022-09-0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29	2021가단5122666	2022-09-0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30	2021가합10437	2022-09-15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정정/반론	인용
131	2021가합653	2022-09-15	인천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32	2021가합732	2022-09-1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133	2021가소423879	2022-09-21	서울북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34	2021나14203	2022-09-22	대전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135	2020가합108043	2022-09-22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	기각
136	2021가합112544	2022-09-22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37	2019가단531160	2022-09-28	광주지법	1심	손배	기각
138	2021가합542842	2022-09-28	서울중앙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인용
139	2022나2001105	2022-09-30	서울고법	2심	반론	기각
140	2021나2050773	2022-09-30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141	2021가단5314007	2022-10-0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42	2021가단5317952	2022-10-0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43	2021가단3143	2022-10-12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손배	기각
144	2022가합100838	2022-10-13	서울남부지법	1심	기사삭제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45	2020가합595092	2022-10-1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46	2021가단5122512	2022-10-1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47	2021가합38850	2022-10-14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48	2021가합560918	2022-10-19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49	2021가합26386	2022-10-19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50	2021가합32487 2021가합35691(병합)	2022-10-21	서울서부지법	1심	반론	인용
151	2021가합30767	2022-10-25	춘천지법 강릉지원	1심	반론/손배	기각
152	2022나2016626	2022-11-03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153	2021가단132414	2022-11-04	서울북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54	2021가합105303	2022-11-10	대전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기각
155	2021가합114397	2022-11-10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56	2021가합53118	2022-11-10	창원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기각
157	2020나83814	2022-11-11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158	2020나2049476	2022-11-11	서울고법	2심	정정	인용
159	2022나949	2022-11-11	서울고법(춘천)	2심	정정/손배	기각
160	2019가합563358	2022-11-16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61	2021가합559529	2022-11-1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62	2021가합51954	2022-11-17	광주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63	2021가합546615	2022-11-18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164	2021가합581243	2022-11-2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65	2021가단208584	2022-11-25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66	2022가합521378	2022-11-30	서울중앙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인용
167	2021나40067	2022-11-30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168	2021가합549683	2022-11-30	서울중앙지법	1심	기사삭제/손배	인용
169	2021가합41986	2022-12-0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70	2022나2033782	2022-12-08	서울고법	환송후심	정정/손배	기각
171	2021나126885	2022-12-14	대전지법	2심	손배	기각
172	2021가합546585	2022-12-2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173	2021가합592892	2022-12-2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기각

